#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7

발의연월일: 2021. 2. 4.

발 의 자:김성주·이학영·진성준

최혜영 • 이정문 • 한병도

이용빈 • 고용진 • 박홍근

임호선 · 고영인 · 이탄희

허종식 • 정춘숙 • 서영석

홍성국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

#### 법률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② (생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83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b></b>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
	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